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7. 7 선고 2020나118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7. 7 선고 2020나11891 판결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8. 27 선고 2019가합120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논

담당변호사 김선남, 이정훈, 안샘물, 정효진, 임현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1. 6. 2.

판결 선고 2021. 7. 7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8. 27. 선고 2019가합120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남원시 H 답 2,033㎡에 관하여,

가.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. 7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주식회사 C는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,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봉원

판사김성주

판사조찬영